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3. 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3.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2. 3.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심사보고자 : 기획계산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협의를 마치고 동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경비부담 및 지출 명시(안 제16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함
 - 회비는 월 100,000원으로 함
 - 회비는 회의 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함
 - 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함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와 회원의 경조사비
 -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 회계의 보고 및 회계실무자 지정(안 제17조)
 - 협의회는 경비집행 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보고
 -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회장은 부천시장입니까?	○ 인천 계양구청장입니다.
○ 예산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 회의개최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식사비 정도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 회비 10만원은 별도 예산 편성합니까?	○ 지침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규약을 부천시에 두는지?	○ 8개 시에서 해당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안번호	제566호
의결년월일	2002. 3. 20 (제94회)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동법 제148조(협의회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협의를 마치고 동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경비부담 및 지출 명시(안 제16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함
 - 회비는 월 100,000원으로 함
 - 회비는 회의 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함
 - 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함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와 회원의 경조사비
 -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 회계의 보고 및 회계실무자 지정(안 제17조)
 - 협의회회 경비집행 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보고
 -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비부담 및 지출)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회원의 회비는 월 100,000원으로 한다.
- ③회비는 회의 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한다.
- ④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3. 회원의 경조사비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회계) ①협의회의 경비집행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비부담) <u>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u>	제16조(경비부담 및 지출) ① <u>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② <u>회원의 회비는 월 100,000원으로 한다.</u> ③ <u>회비는 회의 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한다.</u> ④ <u>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한다.</u> 1. <u>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u> 2. <u>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u> 3. <u>회원의 경조사비</u> 4. <u>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u>
제17조(회계) <u>협의회의 경비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17조(회계) ① <u>협의회의 경비집행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보고한다.</u>

②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참고자료 : 현행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붙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②위원은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8. 인접지역 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 9.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 1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하되 상반기는 3~4월 중에 하반기는 9~10월 중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친사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 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구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사가 조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시·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 ④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⑤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제정 및 기타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